

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4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0번지
4. 정비구역의 면적: 4,958.00m²
5. 사업시행자의 성명: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장 김기훈
6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75-18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8개월
8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6. 1. 8.
9. 수용·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해당 없음
10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- 가. 대지면적: 4,958.00m²
 - 나. 건 폐 율: 22.22%
 - 다. 용 적 륜: 193.09%
 - 라. 건축물 높이: 39.5m
 - 마. 용 도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 - 바. 연 면 적: 13,829.7565m²

11. 주택의 규모: 지상12층/지하2층, 아파트 2개동, 82세대(분양82, 임대0)

12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아파트	82	0	46	36
조합원	아파트	36	0	14	22
일반분양	아파트	46	0	32	14

13.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대상: 해당 없음

14. 의제사항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5조(다른 법률의 인·허가등의 의제 등) 제1항제1호, 제3호, 제6호, 제12호